

처 상임위원회 5급직원 10명과 상임위원장실, 의원연구실 및 별관 기자실 여직원 14명을 증원하는 改正條例案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급직원 1명과 議員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공보실 편집요원 1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修正案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審査報告書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修正案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委員會의 修正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중 “221명”을 “223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554명”을 “2,583명”으로, 동조제2호중 “197명”을 “223명”으로, 동조제3호중 “5,733명”을 “5,743명”으로, 동조제4호중 “9,754명”을 “9,7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造景施設管理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4時 31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6항 서울特別市造景施設管理條例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鄭泰宗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宗議員 生活環境委員會 所屬 鄭泰宗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本議員이 우리 生活環境委員會에서 심사의결한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造景施設管理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本會議에 상정된 2건의 條例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5월 9일 제1차 및 5월 13일 제3차 生活環境委員會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신중히 검토·심사한 끝에 제출된 改正條例案 및 制定條例案 2건을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쓰레기줄이기와資源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처리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육성자금을 융자·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條例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市長의 책무에서 일반폐기물의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은 廢棄物管理法에서 위임된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금액을